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59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임광현·정일영·오기형

김태년 • 윤호중 • 이연희

정성호 · 정태호 · 안태준

강준현 · 김영환 · 박홍배

이기헌 · 강유정 · 황정아

안도걸 · 김기표 · 문금주

윤종군 • 이재관 • 민홍철

송재봉 • 박민규 • 정준호

안규백 • 차지호 • 정진욱

박찬대 • 박희승 • 최기상

임미애 · 조계원 · 김남희

의원(3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

한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 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합산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기본공제) ① (생 략)	제50조(기본공제) ① (현행과 같
	승)
<u><신 설></u>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
	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배
	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
	자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u>②·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